

영주시 공고 제2023 - 1036호

「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영 주 시 장



##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 관련 심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2조)
- 나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3조)
- 다.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3조2)
- 라. 위원의 해촉 및 회의 관련 사항 변경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12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아동청소년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아동청소년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72

E-mail : jss0915@korea.kr, FAX : (054)639-634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##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장”을 “국장 및 부서장”으로 하고,  
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
나.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
제3조의2제2항 중 “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영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”을 “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의 제목 “(회의 등)”을 “(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 중 “제5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영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「<u>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</u> <u>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<u>국장</u>이 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 <u>국장 및 부서장</u>----- ----- ----- - . -----</p>

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
2. ~ 7. (생략)

제3조의2(사례결정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영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, 질병

-----  
-----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
나.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사례결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장-----  
-----

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  
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 
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  
설하였을 경우

3.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 
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 
친 경우

4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 
경우
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  
을 손상하였거나, 위원으로 부  
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회의 등) ① 심의위원회의 회  
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  
며,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  
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 
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위원의 제척) 위원은 심의의  
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  
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
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우선조치) 시장은 제2조제1  
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
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

제7조(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  
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경우에 소집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0조(우선조치) -----  
----- 제7호-----  
-----

요한 조치를 취한 후,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 심의위원회  
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 
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이  
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 
팀장이 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제12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 
며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팀장  
이 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	연락처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